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사과정의 기록·관리체계 강화 및 기록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등〉
■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570호)

2026.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입법취지 및 필요성	3
2. 형사사법정보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의 구체화	5
3. 수사공무원 및 검사의 기록·등재 의무	14
4. 기록·등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징계 절차	1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원 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 2026. 8. 13.
3. 회 부 일 : 2026.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 녹화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전 과정의 기록·관리와 사후 검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과의 접촉·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의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기록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증거물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또한,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주요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등재하고, 기록 변경 시 그 사유와 처리이력을 남기며 종전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 각 기관의 장은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아울러 사건처리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기록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와 공소 전 과정에 기록과 책임이 남고 사후 검증이 가능한 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4호, 제5조의2 및 제15조제4항·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입법취지 및 필요성

- 2026년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공소 업무의 조직적 분리에 대응하여, 수사 관계 서류·증거물과 보완수사요구 및 공소제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도록 하는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도입 하였음.
-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관한 특별법적·절차법적 성격을 갖는 현행법에 수사책임자, 사건관계인 접촉내역, 수사 관계 서류·증거물 및 그 변경이력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등재하도록 함으로써,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한 전자적 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동일 사건이 수사·송치·보완수사·재수사 및 공소제기 단계로 이동 하는 과정에서 기록의 완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사행위 및 증거물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관리의 대상·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음.

○ 참고로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규정 중 개정안과 직접 관련된 조문은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제199조의2,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에 관한 제220조의2 및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한 제244조의6으로,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조문	제도	주요내용	시행일
제199조의2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수사 관계 서류·증거물과 보완수사 요구·공소제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등재하고, 기관장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기관별 시행일 상이 ¹⁾
제220조의2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사법경찰관이 영장 또는 긴급처분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함.	2027. 8. 5.
제244조의6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녹음하여야 함.	2027. 8. 5.

1)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해서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 그 밖의 수사기관은 법 공포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2. 형사사법정보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의 구체화

- 개정안은 수사 관련 접촉 및 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의 처리, 수사책임자 및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등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는 수사과정상 정보의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수사기록 및 그 변경·처리이력 관리 등 수사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데 필요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3. ----- ----- ----- ----- ----- ----- ----- -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신설>	

<신 설>

<신 설>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
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른 수사처검사, 같
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
처수사관 및 법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이하 "수사공무원"이라
한다)이 수사(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제기 이후의 보
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포함한다)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
지 피의자, 참고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그 진술을 청취한 일시·
장소·상대방 및 그 내용
에 관한 사항

나. 압수·수색·검증의 실시
및 결과(영상자료를 포함
한다)에 관한 사항

다. 증거·양형자료 등의 발
견·취득·제출·보관·이
관·반환·폐기 등 증거물
의 처리 및 주요 수사행위

<신 설>

<신 설>

4.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의 실시·결과에 관한 사항

라. 수사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를 포함한 수사 전 과정의 책임 귀속에 관한 사항
마.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에 관한 사항

4. -----

----- 관리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

가. 수사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수사책임자 실명 등록 및 관리 기능

나.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자료 및 피의자·참고인 진술 영상자료의 등재

<u><신 설></u>	<u>· 보관 기능</u> <u>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u> <u>수사 진행 경과의 시간 순</u> <u>서에 따른 기록·등재 기</u> <u>능</u>
<u><신 설></u>	<u>라. 수사 과정의 사후 검증에</u> <u>필요한 기록 및 이력을 확</u> <u>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u> <u>능</u>
<u><신 설></u>	<u>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u> <u>그 이행 결과의 등재·관</u> <u>리 기능</u>
<u><신 설></u>	<u>바. 형사사법정보의 최초 등</u> <u>록 일시와 등록자, 수정·</u> <u>삭제 일시와 처리자 및 수</u> <u>정·삭제 전후의 내용을</u> <u>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u> <u>기능</u>
<u><신 설></u>	<u>사. 동일 사건의 수사·송치</u> <u>· 보완수사·재수사·공소</u> <u>제기 등 각 단계의 기록을</u> <u>사건별로 연계하여 관리할</u> <u>수 있는 기능</u>
<u><신 설></u>	<u>아. 증거물 등의 발견·취득</u> <u>부터 보관·이관·반환·</u> <u>폐기에 이르기까지 처리이</u>

	<u>력을 연속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u>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는 수사과정에서 생성·관리되는 주요 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수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 먼저, 안 제2조제3호가목은 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 및 법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수사공무원”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수사공무원은 안 제5조의2에 따른 기록·등재 의무의 주체가 됨.
-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제1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록·등재 의무의 주체를 “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²⁾. 개정안은 같은 규정에 따른 전자적 관리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므로, 양 법률의 적용대상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수사공무원의 범위를 「형사소송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보관·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법경찰관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법률뿐 아니라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범죄수사 권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 이므로 그 권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제1항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법률상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3호가목을 “사법경찰관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2조제3호가목은 수사공무원이 수사와 관련하여 사람과 “접촉”하거나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일시·장소·방식 및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같은 호 다목은 “주요 수사 행위”의 실시 결과에 관한 정보를 형사사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접촉”은 대면·전화·전자우편·메신저 등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우연하거나 일상적인 만남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기록대상이 되는 접촉의 상대방·목적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특히 수사공무원이 직무상 여러 사람과 빈번하게 의사소통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수사와 관련된 모든 접촉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기록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실제 이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주요 수사행위”는 어떠한 수사행위를 주요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따라 기록·등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이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록·등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및 벌칙 규정의 적용범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록의무의 대상과 범위가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접촉”과 “주요 수사행위”의 의미를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록대상과 기록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률에 위임 근거를 두어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2조제4호나목은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의 신설

취지를 반영하여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자료를 형사사법정보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에 관한 제220조의2와 함께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한 제244조의6도 신설되었음. 개정안이 신설된 영상녹화 규정에 맞추어 관련 영상자료를 형사사법정보에 명시하고 있고, 부칙에서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한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44조의6에 따라 생성되는 녹음물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2조제4호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정의에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의 보관, 기록의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증거물 처리이력 관리 등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임.
- 그러나 정의규정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내용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기능을 정한 것으로서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실체적 규정에 해당함. 이를 시스템의 정의에 포함하면 용어의 정의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의무가 하나의 조항에 혼재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제2조제4호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정의만을 두고,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기능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문의 성격과 법률체계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안 제2조제4호아목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 “증거물 등의 처리이력을 관리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등”에 포함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해당 규정이 증거물의 보관·이동·반환·폐기 등 처리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등”을 삭제하여 관리대상을 “증거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증거물 외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보관·처리되는 관련 서류까지 처리이력 관리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라면,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제1항이 전자적 기록·등재 대상을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물 등”을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로 수정함으로써 관리대상을 구체화하고 양 법률 간 용어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3. 수사공무원 및 검사의 기록·등재 의무

- 개정안은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도록 하고, 해당 기록을 정정·보완·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이력을 기록하는 한편 변경 전 기록도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5조의2(수사공무원의 기록·등재 의무) ① 수사공무원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u> <u>②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그 처리 결과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u>

	<u>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u> <u>③ 수사공무원 및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 사항을 정정·보완·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및 처리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 전 기록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u> <u>④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안 제5조의2는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의 주요 사항을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고 변경 전 기록과 처리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완전성·연속성과 변경 과정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의2제4항은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항의 “수사기관”은 안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공무원이 소속되어 범죄수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³⁾.
- 그런데 개정안은 각 기관의 소관 및 지휘·감독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사기관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점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두 부처 장관이 모든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점검 결과를 두 부처 장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이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되, 그 결과는 기관별 소속 및 지휘·감독 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기관으로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장에게는 자체점검 의무만을 부과하고 법무부

3) 예컨대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 및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군 수사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장관 및 행안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⁴⁾.

- 한편, 개정안은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점검의 주기·범위·방법 및 결과의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점검 및 보고가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5조의 2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제4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범위·방법 및 점검 결과의 보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고 소속 감독부처가 없는 점,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록·등재 및 자체점검 의무는 적용하되 두 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의 적용대상에서는 공수처장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기록·등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징계 절차

- 개정안은 수사 또는 사건처리의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의 주요 사항을 기록·등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등재한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벌칙) ① ~ ③ (생략)	제15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④ 수사 또는 사건처리의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등재한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신설></u>	<u>⑤ 제4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 소속 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u>

- 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은 수사 또는 사건처리의 경과를 은폐·왜곡하기 위한 기록 누락과 허위 기록을 처벌하고 징계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고의적인 기록 훼손행위를 억제하고 기록·등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5조제4항은 “수사 또는 사건처리의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등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등제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문언만으로는 “수사 또는 사건처리의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이라는 목적요건이 기록·등재를 하지 아니한 행위와 허위로 기록·등제한 행위 모두에 적용되는지, 기록·등재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만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개정안의 취지가 은폐·왜곡의 목적이 있는 기록 누락과 허위 기록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라면, 목적요건을 각 행위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먼저 규정하고 처벌대상 행위를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구성요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은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⁵⁾. 반면, 개정안은 수사 또는 사건처리의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등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등재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행위는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록·등재함으로써 기록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과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사후적 확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법정형을 제14조제2항에 따른 권한 없는 형사사법정보의 열람, 복사 또는 전송에 대한 법정형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에 대한 제공 등 부당한 목적의 사용에 대한 법정형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각 행위의 보호법익, 행위태양 및 침해 결과 등을 비교하여 동일 법률 내 형벌체계의 정합성과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현행법 제15조(벌칙)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편, 안 제15조제5항은 “제4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가 속한 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4항은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처벌대상 행위를 정한 벌칙규정이므로, 제4항에서 정한 처벌대상 행위를 명확히 지칭하도록 제5항의 “제4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검사징계법」 제7조 등 수사공무원과 검사에게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⁶⁾.

○ 또한 현행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 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개정안은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관계 징계 법령과의 중복 여부 및 동일 조문 내 벌칙 규정 간 규율

6)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검사징계법」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② 징계청구자는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체계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안 제15조제5항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65